서울특별시 데이터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의 안 번 호 2024. 06. 18. 주택공간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1. 제안경위

○ 2024. 05. 27. 최재란 의원 발의 (2024. 05. 30. 회부)

2. 제안이유

- 빅데이터 사회의 도래와 함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작은 데이터가 모인 큰 정보가 중요해진 국내외 상황을 반영하여 데이터를 공유하고 함께 활용하는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데이터협동조합은 데이터의 설계와 분석 자료로 사용하는 조합원들의 개 인정보뿐 아니라, 조합원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의 축적, 공유를 통해 조 합원의 혜택과 이익을 높여가는 플랫폼임
- 이에 조합원의 보건의료, 교육, 교통, 소비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조합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데이터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함

3. 주요내용

가. 데이터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

정함(안 제4조)

- 나. 데이터 보안에 대한 데이터협동조합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 다. 시장이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라. 시장이 데이터협동조합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제8조)
- 바. 시장이 데이터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 (안 제9조)

4. 검토의견

가. 제안경위

- 이 제정조례안은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운영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4년 5월 27일 최재란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현행 정부 및 서울시의 정책과 제도(붙임2 및 붙임3 참고)는 '공공데이터의 활용'과 '정보화 사업의 효율성 제고' 등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시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축적한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정책 및 제도적 기반은 거의 없는 실정임에 따라 이 제정조례안이 발의된 것으로 이해됨.

나. 데이터협동조합 현황

○ 집행기관에 따르면, 서울시 내 협동조합1)은 총 4,195개(공정경제담당관 소관)

¹⁾ **협동조합이란**, ①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과 구매, 판매 등을 협동으로 영위해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조직(「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이며, ②공동으로 소유되고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을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국제협동조합연맹)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이며, 조합원의 데이터 활용을 목적으로 설립·운영중인 협동조합은 1개소(디지털정책관 확인결과) 뿐인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조합원은 총 2명이며 데이터 구축 및 활용과 관련한 전문성은 부재한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면 조합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협동조합의 육성 및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 내 협동조합 중 데이터 활용 협동조합 사례 >

구분	협동조합명	목적	주요사업	비고
일 반 협동 조합	한국대중 예술댄서 협동조합 ²⁾	조합원의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댄서 지원	 ▶ 댄서 예술활동 증빙 DB 구축사업 ▶ 댄서 구인,구직 활용 네트워크 구축사업 ▶ 경연, 강연, 교육, 학술회 등 해당 분야의 문화예술발전 사업 ▶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 조합원 총 2명 - 데이터구축 및 활용 관련 전문성 부재

[※] 디지털정책관 제출자료 재각색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이 제정조례안은 총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주 요 내 용			
제1조 (목적)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 운영 및 육성을 지원		
제2조 (정의)	· 데이터, 데이터협동조합, 조합원 등 용어 정의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함을 규정		

^{2) &#}x27;한국대중예술댄서 협동조합'은 성동구에 소재하며, 협동조합 인원은 총 2명임. 댄스관련 분야 종사자 간 상호 연결을 목적으로 구직·댄스콘텐츠 공유 등 데이터를 취합하여 DB화하려고 하였으나, 설립 (2022.04.02.)이후 현재까지 데이터 관련 문제(조합원 2명, 데이터 관련 전문성 결여 등)로 인하여 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주 요 내 용				
제4조 (시장의책무)	 시장은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종합적인 시책 수립및 시행 교육과 홍보를 통한 데이터협동조합의 중요성과 가치 확산 			
제5조(데이터협동조합의 책무)	· 데이터 사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조합원의 데이터 소유권 보호 방안, 데이터 보호를 위한 방안 규정			
제6조 (설립 및 운영 지원)	·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 주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가능 규정			
제7조 (교육훈련 지원)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 가능 규정			
제8조 (홍보)	· 데이터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홍보활동 등 지원가능한 사항 규정			
제9조 (협력체계 구축)	·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된 사항 규정			
제10조 (시행규칙)	· 조례 시행을 위한 규칙제정 근거 명시			
부칙	· 시행일(공포 즉시 시행)			

라. 주요 조문별 검토

(1)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데이터", "데이터협동조합", "조합원" 등에 대해 정의하면서, 일부 관련 법률³⁾을 인용하였음.
- 안 제2조제1호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 조제1호를 인용하여 "데이터"의 의미를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데이터 답협동조합이 조합원의 개인정보 등을 활용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정의의 범주를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겠음.
- 안 제2조제2호에서는 데이터협동조합을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협동조합법") 상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등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겠음.

^{3)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

< 수정의견 >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제2조(정의) (제정안과 같음)
음과 같다.	
1. "데이터"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1
관한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u>데이터를 말</u>	<u>데이터 중</u>
<u>한다.</u>	<u>조합원의 테이터를 말한다.</u>
2. "데이터협동조합"이란 <u>조합원이 제공한 데이터</u>	2 <u>「협동조합 기본법」제2</u>
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	조제1호부터 제4호 중 조합원이 제공한 데이
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설립한 「협동	<u>터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u>
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설립한
합회(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u>것을 말한다.</u>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조합원"이란 데이터협동조합에 데이터를 제공	3. (제정안과 같음)
하고, 협동조합의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안 제3조제2항**은 '데이터협동조합 육성'과 관련된 사항을 이 제정조례안 이외의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할 때는 이 제정조례안에 부합토록 하고 있는 데, 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이 중복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수정안을 제시함.

< 수정의견 >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u>①</u> 데이터협동조합 육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정안과 같음)
성과 관련된 사항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② 데이터협동조합 육성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규칙	<삭 제>
으로 정할 때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여야 한다.	

(4) 시장의 책무(안 제4조)

- **안 제4조**는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지원과 함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역할을 명시한 것으로 데이터협동조합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안 제4조제2항에서는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이하 "협동조합조례")에 따라 시장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협동조합조례 제5조에 따르면 '협동조합 기본계획(3년마다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음.(붙임5 참고)
- 따라서, 협동조합 활성화 관련 계획수립 및 실행체계에 대한 현행 조례가 운용 중인 상황에서, '데이터협동조합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별도로 수립·시행하게 될 경우 정책의 중복, 수립기간 상이 시 실행 과 정에서의 혼란 등이 우려되는바, 협동조합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수립될 수 있도록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음.

< 수정의견 >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데이터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데이터협동조합의 육성을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u>「서울특별</u> 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종합 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③ 시장은 데이터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 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 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립·시행할 수 있다. ③ (제정안과 같음)

○ 참고로 집행기관(빅데이터담당관)에서는 데이터협동조합을 육성하여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이 제정조례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 협동조합 조례를 통해 이 제정조례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으로부터 '협동 조합기본조례 개정을 통해서도 이 제정조례안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함께 '디지털 기술분야별로 무분별한 조례 제정 가능성'을 우려하는 의견4〉도 제출되었음.

(5) 데이터협동조합의 책무(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데이터협동조합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5조제2항은 조합원의 데이터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규정하여, 데이터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데이터 협동조합의 신뢰성을 높이기위한 것으로 이해됨.
- 다만 '동의 절차'와 '투명한 공개'의 의무만 규정한 채,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안 제5조제3항**에서는 조합원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신 보안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보안 점검토록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데이터 유출 등으로부터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인 것으로 이해됨.
- 다만, '최신 보안 기술'과 '데이터 보안⁵)을 위한 점검 시기' 등이 구체적 이지 않으므로 조합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데이

^{4)「}서울특별시 데이터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중 시민 의견이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됨.(2024.6.6.)

⁵⁾ 데이터 보안의 방법에는 데이터의 변경·훼손·유출 및 파괴 등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등이 있음

터협동조합의 책무를 견고히 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수정의견 >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데이터협동조합의 책무) ① 데이터협동조합은 데이터 사용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데이터협동조합의 책무) ① (제정안과 같음)
② 데이터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데이터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u>데이터 사용에 대한 명확한</u> 동의 절차를 마련하고 데이터 사용 내역을 투 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신 설>	1. 데이터협동조합은 데이터 사용에 대한 명확한 동의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데이터 사용 목적나. 데이터 수집 및 사용 범위다. 데이터 보관 기간라. 데이터 제공 및 공유 대상마.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신 설>	2. 데이터협동조합은 데이터 사용 내역을 조합원 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 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u>가. 정기적으로 데이터 사용 내역을 보고서 형태로</u> 조합원에게 제공
	<u>나. 데이터 사용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온라인 플</u> 랫폼 구축
	다. 데이터 사용 관련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공지 및 조치
	라.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데이터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③ <u>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u>
보호하기 위하여 최신 보안 기술을 도입하고 정기적인 보안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u> </u>	<u> </u>

(6) 설립 및 운영 지원·교육훈련 지원·홍보(안 제6조~제8조)

-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시장에게 ▲ 데이터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지원(안 제6조) ▲ 교육훈련 지원(안 제7조) ▲ 홍보(안 제8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에서는 ▲ 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으며(제1항), ▲ 데이터 관리 및 보안 기술, 데이터 활용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컨설팅도 지원(제2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이 데이터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재정 상황과 정책적 판단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마. 종합의견

- 이 제정조례안은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합원이 축적한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인 데이터협동조합의 육성을 통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조례의 제정은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협동조합조례에 따라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중인 상황에서 데이터협동조합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유형으로 나타나는 협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데이터협동조합 육성 및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이 '협동조합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 및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노력이 필요하겠음.

의안심사지원팀장	강대만	02-2180-8204
입 법 조 사 관	전재성	02-2180-8205

[붙임1] 관련 법령 (p.11)

[붙임2] 정부의 3대 디지털 혁신 정책 (p.27)

[붙임3] 서울시 디지털정책관 소관 조례 및 데이터 관련 조례 (p.28)

[붙임4] 협동조합 관련 법 및 조례와의 비교 (p.29)

[붙임5] 유사조례간 기본계획 비교 (p.30)

붙임1 관련 법령

■ 협동조합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 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 5.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명칭) 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각각 명칭에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과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연합회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문자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할 수 없다.
 - ④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그 명칭에 국가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

- 하 "시·도"라 한다)의 명칭을 사용하여 국가나 시·도의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일반인의 오해 나 혼동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자금, 회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연합회등이 그 명칭에 제4항에 따른 국가나 시ㆍ도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국가나 지역에 대한 대표성 등에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등에 그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 제4조(법인격과 주소) ①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1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법인으로 한다.
 - ②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 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 ③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5조(설립 목적)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구성원(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을, 연합회의 경우 회원을 말한다. 이하 "조합원등"이라 한다)의 복리 증진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며, 조합원등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수요에 부응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원칙) ①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그 업무 수행 시 조합원등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 ②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③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일부 조합원등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협동조합등의 책무)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조합원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 * 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①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등과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과 교류,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0조의2(경영 지원)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勞務)、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의3(교육훈련 지원)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조합원등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 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방향
 - 2.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
 - 3.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발전 전략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4.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상호협력 및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 5. 제6항에 따른 협동조합 실태조사의 결과 및 협동조합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과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총괄 및 기본계획의 수립과 협

- 의 , 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의 활동현황ㆍ자금ㆍ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의2(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① 협동조합의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본계획의 수립 , 변경에 관한 사항
 - 2.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설립、합병、분할의 신고 또는 인가에 관련된 사항
 - 3.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관리、감독에 관련된 사항
 - 4.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 조정 등에 관련된 사항
 - 5. 그 밖에 협동조합과 관련된 법ㆍ제도의 개선 등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2. 협동조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협동조합의 날) ① 국가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하며, 협동조합의 날 이전 1주간을 협동조합 주간으로 지정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협동조합의 설립 및 육성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 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데이터"란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 시스템 및「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2. "공공데이터"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말한다.
 - 3. "민간데이터"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자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를 말한다.
 - 4. "데이터생산자"란 데이터의 생성ㆍ가공ㆍ제작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 5. "데이터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생산、유통、거래、활용 등일련의 과정과 관련된 행위와 이와 관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 6. "데이터사업자"란 데이터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7. "데이터거래사업자"란 데이터사업자 중 데이터를 직접 판매하거나 데이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와 구매하고자 하는 자 사이의 거래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8. "데이터분석제공사업자"란 데이터사업자 중 데이터를 수집、결합、가공하여 통합、분석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범위에서 데이터의 국내 외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시장중심의 의사형성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지식재산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및「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산업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최소화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 (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7.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 7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

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
 -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 사 에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 6.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
-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 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 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 지원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적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저작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 (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7.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 7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

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
 -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 사 에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 6.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
-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 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 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 지원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적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 일자리의 창출, 경제민주화의 실현, 지역공동체의 회복 및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협동조합"이란「협동조합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와 개별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2.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3. "협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협동조합이 다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협의 체를 말한다.
 - 4. "협동조합 생태계"란 협동조합의 설립, 발전, 시장의 조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 및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 5. "사회적경제"란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및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① 협동조합은 자주·자립·자치의 기본이념과 국제협동조합연맹의 협동조합 가치 와 원칙에 입각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 ②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자발적·민주적 참여와 협동조합 상호 간의 신뢰에 기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동조합의 설립(전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운영을 지원하고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연합회 및 협의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협동의 중요성과 가치를 확산하는 교육과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협동조합이 업종별 다른 중소기업과의 경쟁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자금지원과 제도개선 등을 하여야 한다.
- 제5조(협동조합기본계획) ① 시장은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협동조합

-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협동조합 지원 정책의 비전 및 발전전략
- 2. 다음 각 목의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시책에 대한 사항
- 가.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지원
- 나. 협동조합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교육, 컨설팅
- 다.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 및 예비창업자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
- 라. 협동조합의 기반 구축 및 여건 조성
- 마. 공공구매 및 공공서비스 위탁 활성화
- 3. 협동조합 관계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 4. 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 5. 협동조합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 는 해당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 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협동조합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협동조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제9조의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대신한다.<개정 2016.1.7.>
 - ② 위원회는 협동조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 2.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 3.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 4. 그 밖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하

- 기 위하여 위원회에 협동조합활성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8조(상담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 조합 상담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협동조합 설립 상담 및 정보 제공
 - 2. 협동조합 설립 신고 지원
 - 3. 협동조합 설립 예정자, 조합원 및 임직원 교육
 - 4. 협동조합 창업 지원 및 경영 컨설팅
 - 5.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홍보
 - 6. 그밖에 협동조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센터를 관련 단체나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협동조합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1. 시민 및 협동조합 설립 희망자의 협동조합 이해 증진
 - 2. 협동조합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 3. 서울지역 협동조합의 제품 및 서비스 판매 촉진
 - 4. 그 밖에 협동의 가치와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인식 개선 등
- 제10조(협동조합의 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된 7월 첫째 토요일과 이전 1주간의 협동조합 주간에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협동조합기금 조성·운용) ① 시장은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조합기금(이하 "협동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 ② 협동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1. 협동조합 창업 및 운영자금 융자
 - 2. 협동조합연합회 및 협의회의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사업비
 - 3. 협동조합 사업의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관련 지원
 -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지원) ① 시장은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세무·회계·기술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 2. 협동조합 전문인력 양성, 조합원 및 임직원 교육 및 창업교육
- 3. 지역별·업종별 협동조합연합회 및 협의회의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 4. 협동기금의 조성
- 5. 지역단위 협동기금 및 재단의 활성화
- 6. 자치구단위 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축
- 7.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력 및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구축 및 활동
-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2(우선 구매 등) ① 시장 또는 시 산하기관의 장은 공사,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계약 시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협동조합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공공구매 목표제를 실시하고, 추진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협동조합의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참여를 장려하며, 민간위탁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3.20]

- 제13조(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조합연합회 및 협의회 등 민간부문 과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시세 등의 감면) ① 협동조합이 시의 재산 또는 물품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대부료를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19.3.28>
 - ②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 시세를 감면할 수 있고, 개별 조례에 따라 사용료, 수수 료,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3.28>
- 제1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 조합 업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4.5.14>
 - ② 시장은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6조(포상) ① 시장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 1. 자립경영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협동조합
 - 2. 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 <제7046호,2019.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②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를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로 한다.

≫부터 <57>까지 생략

정부의 3대 디지털 혁신 정책

참 고 | 윤석열정부의 3대 디지털 혁신 정책

윤석열정부의 3대 디지털혁신 정책 방향 도출 프레임워크

- 조 문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3대 디지털 공약(정부혁신·디지털경제혁신·과학기술혁신) 및 이행 전략 분석
- ② 윤석열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분석
- EW 디지털 핵심 과제(대선공약·이행전략) + 디지털 기반조성·융합·활용 과제 → 4개 범주로 디지털 관련 국정과제 분류
- ③ 윤석열정부의 3대 디지털 혁신 방향(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디지털경제 패권국가 실현·과학기술 선도국가(G5) 도약) 도출
- 다 다시털 핵심 국정과제를 다시털 혁신 방향에 맞춰 재분류 → 세계 최고의 다시털플랫폼정부(11번), 다시털경제 패권국가 실현 (24번·77번·78번·81번·101번), 과학기술 선도국가(G5) 도약(74번·75번·76번·79번·80번)
- 4 운석열정부 출범 1년간('22.5.~'23.5.) 추진한 주요 디지털 정책·거버넌스·법제도 등 분석·정리
- ☞ 3대 디지털 혁신 방향에 맞춰 관련 국정과계 이행을 위해 추진된 주요 디지털 정책 선별 → 디지털 정책·조직·법제도 정리

구	⁰정부혁신	[⊕] 디지털경제 혁신	⁹ 과학기술 혁신
분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디지털경제 패권국가 실현"	"과학기술 선도국가(G5) 도약"
대선공약	윤석열이 국민께 드리는 만능패스, 디지털플랫폼정부	디지털 지구 시대(Digital Earth), 디지털경제 패권국가 실현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첨단기술 선도국가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원사이트 토털서비스 제공, ▲마이 AI포털 제공, ▲빅데이터가 열일하는 정부, ▲디지털 문제해결센터 설립 등	▲인공지능 산업 육성, ▲소프트웨어 산 업 발전, ▲디지털 인프라 구축, ▲디지 털 융합 사업 지원, ▲사이버 안전망 구 축, ▲인재 양성 등	▲민·관 과학기술위원회 신설, ▲정치 과학 영역 분리를 위한 국가 장기 연구 사업 제도 도입, ▲자율적 연구 환경 확립 ▲미래 선도형 연구관리 시스템, ▲정난 과학인을 위한 도전과 기회의 장 마련 등
국 정 과 제	(11번)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24번)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 산업 초격차 확보 (77번)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경제 패권국가 실현 (78번)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81번)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101번)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74번)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75번)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76번)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79번)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80번)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정책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방향'(22.5) 정부혁신 추진방향'(22.10) '공공데이터 혁신전략'(22.12) '제4차('23년~'25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22.12)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23.4) '2023년 정부혁신 종합계획'(23.4) 	 □ 디지털 인재양성 중합방안,(22.8) □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2.9.) □ 新성장 4.0 전략 추진계획,(22.12) □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23.3) □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23.4) □ 디지털 신질서 정립 방안,(23.5) □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23~27),(23.5) 	 ▶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_('22.10) ▶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23-'27) ('22.12) ▶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_('23.2)
조직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TF' ('22.3)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 위원회' ('22.9) '제5기 공공데이타건복위원회 ('22.12) '정부혁신위원회' ('23.1)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22.9)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22.11)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23.3) 	 ▶ '인재양성전략회의' ('23.2) ▶ '국가전략기술특별위원회' ('23.4)
법제도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2.7 제정· 시행, 대통령령)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13.7 제정. '23.5 개정. '23.11 시행 예정)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22.2 제정, '22.12 개정, '23.7 시행)	▶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23.3 제정, '23.9 시형 예정)

서울시 디지털정책관 소관 조례 및 데이터 관련 조례

	담당부서	조례명				
	디지털정책 담당관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를 촉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디지털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지털 산업 발전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함. ▶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도시 인프라 조성을 통해 도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빅데이터 담당관	▶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데이터의 제공과 이용을 활성화하여 데이터 기반의 행정 및 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함.				
디	정보시스템 담당관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함.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 				
지 털 정 책 관	정보공개 담당관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 행정정보의 공개를 통해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 : 공인의 사용과 관리를 규정하여 행정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				
	공간정보 담당관	► 서울특별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 주소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소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함. ►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 공간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간정보의 체계적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함.				
	정보통신 보안담당관	 ▶서울특별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인터넷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함.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함.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 정보통신 보안업무의 처리를 규정하여 정보통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 				
	서울기록원	▶ 서울특별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 :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함.				
경제전	경제정책과	▶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지원 방안을 규정하여 혁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				
정 책 실	경제정책과 산업입지과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 전략산업의 육성과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협동조합 관련 법 및 조례와의 비교

「협동조합 기본법」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 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 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 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 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 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와 개 별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 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데이터 산업진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 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2.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 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 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 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 다.	2. "데이터협동조합"이란 조합원 이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 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 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설립한 「 <u>협동조합 기본법」상의</u> <u>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u>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 합연합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 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 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3. "협동조합협의회"란 협동조합 이 다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 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3. "조합원"이란 데이터협동조합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협동조합의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 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 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 다.	4. "협동조합 생태계"란 협동조합 의 설립, 발전, 시장의 조성, 이 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 및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 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5.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 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를 말한다.	5. "사회적경제"란 사회경제적 양 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및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 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 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붙임5

유사조례간 기본계획 비교

구분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데이터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근거		「협동조합기본법」	없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소관 부서		경제정책실(경제정첵과)	디지털정책관(디지털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공정경제담당관)
	계 획 명	▶ 협동조합기본계획 (3년마다 수립)	▶ 종합적인 시책 수립 (협동조합기본계획에 따름)	▶ 없음
조례	조문	제5조(협동조합기본계획) 소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화특 위하여 3년마다 협동조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하 한다. 호의 기본계획(이하 다음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협동조합 지원 정착의 의 대한 의 전 및 발전전략 및 바라 전 된 및 바라 한 바라 이 된 된 이 된 된 이 된 된 이 된 된 이 된 된 이 된 된 바라 된 된 이 된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데이터협동조합의 활성 화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데이터협동조합의 육성을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데이터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를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없음